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복지부에 ‘돌봄청’ 신설〉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79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순 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06. 17.
3. 회부연월일 : 2025. 0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 ① ----- ----- <u>학교교육</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복지부) ① ~ ③ (생략)	제39조(보건복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돌봄정책·돌봄기금 운용 등 돌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둔다.
<신설>	⑤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현재 돌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정책, 사회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 건강 등에 관한 사무,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교육 및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및 청소년 방과후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부처별 돌봄 업무 현황」 참조).

최근 급속한 초고령사회¹⁾로 진입과 함께 독거노인·독신 등 1인 가구 급증²⁾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개별 부처에 분산된 돌봄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돌봄청’을 설치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별 부처에 분산된 돌봄 사무에 관한 기능을 통합·관장하는 독립된 외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현재 돌봄 사무는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여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추진 및 개별법에 근거한 돌봄 정책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돌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³⁾ 반면,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1인 가구’ 비중 또 역대 최대...10가구 중 1가구 ‘독거 노인’”, YTN, 2024.7.29., “동남권 청년층 54% ‘1인 가구’...20대 급증”, KBS News, 2025.7.29.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3) 이와 관련, 보건 의료 및 요양·돌봄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02.29., 2026.3.27. 시행예정)되었음.

돌봄서비스는 교육·보건의료·복지·고용·노동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기능이 어우러져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행 체제와 같이 개별 분야의 소관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이 수행하는 돌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모두 이관할 경우 개별 부내 연계 사무와의 분절화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돌봄 정책은 관련된 대상 및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존 부처 기능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담 부처 신설 시 다른 복지기능과 연계한 종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신설로 인한 행정조직 비대화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부내 각종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협업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는 유·초·중·고 생애주기별 교육정책의 연계성 및 학교 교육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신설보다 현행 체계 내에서 제도 내실화 및 지원 강화가 더 효과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소관 사무가 각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서 부처별 소관 사무를 돌봄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 및 서비스 공백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유관 부처들 간 효율적 기능·역할 분담 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돌봄청을 신설하게 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9억 7,200만원(연평균 35억 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25.7.17.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돌봄청 신설(안 제39조)	3,567	3,471	3,556	3,644	3,734	17,972	3,594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부처별 돌봄 업무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근거법령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총괄 ▶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 ▶ 영유아 교원 양성, 정원·인사 관리 ▶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등
	늘봄학교정책과	▶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 학교 운영	초·중등교육법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 고독사 예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인구· 사회서비스 정책실	▶ 아동복지, 보호대상 아동 보호, 아동학대 방지 ▶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 복지, 인권 및 학대 대응,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건강	장애인 복지법 등
고용 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운영 ▶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 총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가사랑) 구축·운영	가사근로자법
여성 가족부	가족문화과	▶ 아이돌봄 지원 정책 총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노무 관리 ▶ 아이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가족정책과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민관협력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청소년 기본법

자료 : 행정안전부

둘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 중 안 제39조제4항에 따른 돌봄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도록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경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본칙의 개정사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은 타법의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부칙으로써 변경하는 일괄개정방식보다는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임.

부 칙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교육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또는 돌봄청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돌봄청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돌봄청
여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또는 돌봄청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본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돌봄’이란 용어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돌봄 사무의 대상 및 범위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임.

‘돌봄’이란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봄 지원법」 등 3개 법률의 제명,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3개 조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돌봄’의 정의, 돌봄정책의 방향과 수립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기본법안」⁵⁾의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음.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돌봄청의 관장사무를 “돌봄정책, 돌봄기금의 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특정 목적의 기금 운용을 포함하는 것은 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

5) 의안번호 제2210878호,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025.06.17. 발의,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